의안번호	2202613
의 뢰 인	최보윤 의원
회 답 일	2024. 8. 12.
추계번호	24C2579

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21조(건강보건관리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 지원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
2	안 제36조(자립지원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주택지원, 주거유지 지원 등 주거서비스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(제2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의 정도 및 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자립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,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여야 함
3	안 제40조(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거주 장애인 자립지원)	(제1항)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도지사・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거주 장애인과 법정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매년 자립지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(제2항)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도지사・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욕구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퇴소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장애인의 특성, 자립능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(제3항)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도지사・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59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거주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선 퇴소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지원해야 함 1.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가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체벌, 폭행, 학대, 유기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거나 성범죄(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・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저지른 경우 해당 기관 2. 그 밖에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도지사・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기관기준의 현저한 미달, 부적절한 기관운영 등으로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
4	안 제41조(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)	(제1항)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전환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중앙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(제2항·제4항)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도지사・특별자지차도지사는 지역 내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거주 장애인의 퇴소지원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・단체 등을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로 지정하고,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
5	안 제45조(장애인 등록)	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(査定)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음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6	안 제57조(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함
7	안 제58조(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등 평가)	(제1항)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및 장애인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(제2항·제3항)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, 이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
8	안 제68조(국유·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·무상 대여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장애인 권리보장법안」(의안번호 제2202612호) 제77조에 따른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・수익하게 할 수 있음
9	안 제72조(장애인 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)	장애인재활상담사에 제3급 신설 ※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: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1조(건강보건관리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36조(자립지원)	
3	안 제40조(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거주 장애인 자립지원)	
4	안 제41조(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)	
5	안 제45조(장애인 등록)	
6	안 제57조(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)	
7	안 제58조(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등 평가)	
8	안 제68조(국유·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·무상 대여)	
9	안 제72조(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)	

2. 상세 사유

❑ 개정안은 현행 「장애인복지법」을 「장애인권리보장법」과 「장애인복지법」으로 나누어 규정하기 위하여 「장애인복지법」을 전부개정하고 있음

○ 동 전부개정안의 조항 중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은 기존 사업이 유지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[표 1] 현행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전부개정안의 유사·동일 조항

「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」	현행 「장애인복지법」
안 제6조(장애인복지의 연구)	제29조(복지 연구 등의 진흥)
안 제7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	제3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
안 제8조(자녀교육비 지급)	제38조(자녀교육비 지급)
안 제9조(장애수당)	제49조(장애수당)
안 제10조(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)	제50조(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)
안 제11조(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)	제50조의2(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)
안 제12조(금융정보등의 제공)	제50조의3(금융정보등의 제공)
안 제14조(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)	제51조(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)
안 제15조(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)	제39조(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) 제1항
안 제16조(고용 촉진)	제46조(고용 촉진)
안 제17조(자금 대여 등)	제41조(자금 대여 등)
안 제18조(생업 지원)	제42조(생업 지원)
안 제19조(자립훈련비 지급)	제43조(자립훈련비 지급)
안 제20조(생산품 구매)	제44조(생산품 구매)
안 제22조(재활상담 등의 조치)	제34조(재활상담 등의 조치)
안 제23조(장애 유형・장애 정도별 재활	제35조(장애 유형・장애 정도별 재활
안 제24조(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)	제37조(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)
안 제25조(장애인보조기구)	제65조(장애인보조기구)
안 제26조(의지・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)	제69조(의지・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)
안 제27조(의지・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)	제70조(의지・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)
안 제28조(교육)	제20조(교육)
안 제29조(정보에의 접근)	제22조(정보에의 접근)
안 제30조(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)	제46조의2(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)
안 제31조(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)	제39조(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) 제2항~제4항
안 제32조(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・보급 지원 등)	제40조(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・보급 지원 등)
안 제33조(공공시설의 우선 이용)	제47조(공공시설의 우선 이용)
안 제34조(사회적 인식개선 등)	제25조(사회적 인식개선 등)
안 제35조(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)	제25조의2(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)
안 제37조(활동지원급여의 지원)	제55조(활동지원급여의 지원)
안 제38조(장애동료간 상담)	제56조(장애동료간 상담)

「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」	현행 「장애인복지법」
안 제39조(성 관련 상담 지원)	제56조의2(성 관련 상담 지원)
안 제42조(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)	제54조(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)
안 제43조(장애인 가족지원)	제30조의2(장애인 가족 지원)
안 제46조(자료의 요청)	제32조의9(자료의 요청)
안 제47조(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)	제32조의2(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)
안 제49조(서비스 지원 종합조사)	제32조의4(서비스 지원 종합조사)
안 제50조(업무의 위탁)	제32조의5(업무의 위탁)
안 제51조(상담 및 정보제공 등)	제32조의6(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) 제1항
안 제52조(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)	제32조의7(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)
안 제54조(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)	제32조의8(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)
안 제55조(사업수행기관 협력 등)	제32조의6(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) 제2항~제4항
안 제56조(장애인복지상담원)	제33조(장애인복지상담원)
안 제60조(장애인복지시설 설치)	제59조(장애인복지시설 설치)
안 제65조(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)	제60조의5(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)
안 제69조(장애인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등)	제71조(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)
안 제70조(의지・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)	제72조(의지・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)
안 제71조(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)	제72조의2(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)
안 제73조(국가시험의 실시 등)	제73조(국가시험의 실시 등)
안 제75조(보수교육)	제75조(보수교육)
안 제78조(수수료)	제78조(수수료)
안 제79조(비용 부담)	제79조(비용 부담)
안 제81조(한국언어재활사협회)	제80조의2(한국언어재활사협회)
안 제82조(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)	제80조의3(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)
안 제83조(비용 보조)	제81조(비용 보조)
안 제85조(조세감면)	제83조(조세감면)

❑ 안 제21조, 제36조, 제40조, 제41조, 제45조제3항, 제57조제2항, 제68조 등에 관하여 개정안 시행 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정보의 부재로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워 추계대상에서 제외

○ (안 제21조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사업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실시될 사업의 내용을 알 수 없음

○ (안 제36조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주택지원, 주거유지 지원 등 주거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,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의 정도 및 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자립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,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사업의 내용 등을 알 수 없음

○ (안 제40조)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거주 장애인과 법정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매년 자립지원 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특성, 자립능력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며,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거주 장애인에 대하여 우선 퇴소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조사의 규모와 자립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추가 인력 규모, 우선 퇴소지원 대상자의 지원 대상자 수와 구체적인 지원 내용 등을 알 수 없음

○ (안 제41조) 현재 보건복지부는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지정·운영하고 있고, 광역 시·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, 2026년 이후 본사업 전환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에서, 동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확대될 사업 규모 등을 추정하기 어려움

- 2024년 보건복지부의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지원 예산은 3억 2,600만원
-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(2024년 8월 현재 30개 지역 실시)은 자립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일종의 지역별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임

○ (안 제45조제3항)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해당 위원회 설치 여부 및 추가재정소요 발생 여부 등을 알 수 없음

- 과거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나, 정부는 운영 실적이 저조한 장애판정위원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「장애인복지법」 개정(법률 제20290호, 2024.2.13. 공포, 2024.7.10. 시행)으로 장애판정위원회가 폐지됨

- 다만,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할 때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함

○ (안 제57조제2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추진할 사업의 내용을 알 수 없음

○ (안 제68조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「장애인 권리보장법안」(의안번호 2202612) 제77조에 따른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대부·사용·수익하게 하는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이 감소하는 등 재정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해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종류 및 사용료 단가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재

○ (안 제72조)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는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중 3급을 신설할 경우 문제 출제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안 제73조는 장애인재활상담사 등의 국가시험의 실시방법 및 시험과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추가로 소요될 비용을 추계하기 곤란

- 당초 장애인재활상담사에는 3급 자격이 있었으나「장애인복지법」개정(법률 제16733호, 2019.12.3. 공포, 2020.3.4. 시행)으로 3급 자격이 폐지 됨

❑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Ⅳ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